

---

#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점검표

---

2022. 06.

## 목 차(산업재해)

1.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
2.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2
3.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3
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5
5.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 및 점검 .....	6
6.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10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14
8.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18
9.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 .....	19
10.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 여부 점검 .....	22
11.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및 점검 .....	25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31
13.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33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 예방활동 추진실적 관리(안) .....	36

# 01.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p>◆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p>◆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 하여야 함</p> <p>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p> <p>다.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p>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작성대상 : 2022년 상반기(발생일 기준)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발생일	재해내용	재발방지대책		조치결과		점검 결과	비고
		수립 여부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이행내용		

해당사항 없음

# 02.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li> </ul>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 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li> </ul> </li> <li>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움</li> </ul> </li> <li>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li> </ul> </li> </ul>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 점검 ※ 작성대상 : 2021년 이후

- 서울시 감사 또는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산업재해관련)

※ 작성대상 : 서울시 감사(2021년 이후), 서울시 지도점검(2021년 이후)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점검기관		시정권고 등 요구사항	조치결과		점검 결과	비고
점검부서	점검기간	요구내용	이행 여부	이행내용		

해당사항 없음

# 0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정계전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li> </ul>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li> <li>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li> <li>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함</li> </ul>	경영방침 설정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기준</li> <li>가. 목표와 경영방침은 자율적 설정</li> <li>나. 목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목표 및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 설정</li> <li>다. 목표와 경영방침은 종사자 및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li> <li>라.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후 사업장의 종사자 및 구성원이 그 목표와 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져 함</li> </ul>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기준
4.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 고려사항</li> <li>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할 것</li> <li>나. 달성가능 내용, 측정가능 하거나 성과평가 가능할 것</li> <li>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을 것</li> <li>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하여야 하며, 종사자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이행 노력 필요</li> <li>마. 목표를 개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개정 시행</li> </ul>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 고려사항
5.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점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와 경영방침 점검 시 고려사항</li> <li>가. 연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수립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1.1~12.31.)에 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시기는 전년도 12월 중에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li> <li>- 안전보건경영방침 목표 및 계획/실적 집계는 회계연도(1.1~ 12. 31)에 준한 연간실적을 당해연도 12월에 집계·분석하여,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li> <li>- 최고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영목표 리뷰 및 필요에 (대외 경영환경 변화, 이슈, 사업리스크 검토 등) 따라 변경 수립</li> </ul> </li> <li>나. 안전경영방침 설정 및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경영목표 수정 및 필요에 (대외 환경변화 등) 따라 변경 수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승인 문서</li>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업장 종사자 및 구성원의 그 목표와 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져 함 (사업장의 경영방침 게시 사진 또는 교육일지)</li> </ul> </li> <li>다. 연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영목표 수정 및 필요에 (대외 환경변화 등) 따라 변경 수립 승인 문서</li> <li>- 연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수립 시기와 동일 절차 준수</li> </ul> </li> </ul>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점검표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본사/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점검 결과	비 고 (관련근거)
1	연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및 설정	안전처 점검사항	수립 문서번호 : 안전처-6984(21.12.23)-이사장방침제122호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게시	○	부서 및 관리소별 게시 현황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p><b>비전</b>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건강한 근로자</p> <p><b>목표</b>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없는 사업장</p> <p>“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없는 사업장” (공단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16쪽)</p>	<p>서울시립공단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모든 임직원의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의구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을 선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은 사고' 등 '모든 재해예방'을 전사적으로 차당하고, 특히 '중대재해' 발생은 철저히 방지한다.</li> <li>2. 소속직원의 위험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위험성 사전 예측 등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한다.</li> <li>3.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 의식 제고로 안전 문화를 정착한다.</li> <li>4.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 보건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li> <li>5. 본 방침을 모든 시민과 종사자에게 공개, 실천하여 안전보건 경영을 확립한다.</li> </ol> <p>2022. 6. 서울시립공단 이사장 한 국 영 36200</p>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 경영방침

## □ 안전경영방침 설정 게시 사진 첨부

청사 9층 사무실	상황센터	생태팀 현장사무실	생태반 현장사무실	청소반 현장사무실
1구역 안내센터	2구역 안내센터	3구역 안내센터	생태학교	유지용수관리소

## 0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가이드 및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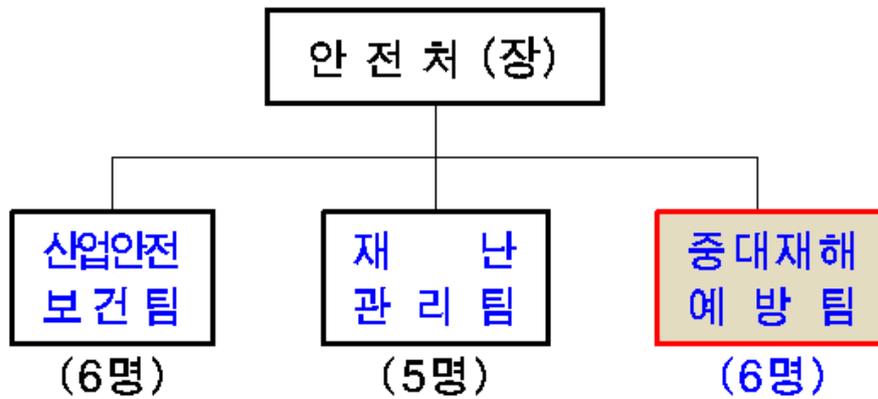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정계전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 전담조직(안전처) 신설



□ 중대재해예방팀 구성

연 번	직 급	직 위	성 명	주요업무	비 고
1	3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상하	- 중대재해예방팀 업무총괄	안전처작성
2	4	차장	유상호	-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관리 총괄	
3	5	과장	강대중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총괄(중대산업재해 전담) -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관리 및 조치 총괄	
4	5	과장	강세라	-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련 업무총괄 -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총괄	
5	6	대리	이민재	-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련 업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관리	
6	7	선임	박상우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중대산업재해 전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평가 총괄	

# 05.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 및 점검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 및 점검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정계전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위험성평가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최초평가(모든 업무 및 내·외부 현안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li> <li>나. 정기평가(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정기적으로 실시)</li> <li>다. 수시평가(아차사고, 공정변경 및 작업사항 변경,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 등)</li> </ul> </li> <li>◆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대상 : 본사 및 전 사업장</li> <li>◆ 단계별 수행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re> graph LR     A[1단계 평가대상 작업 선정] --&gt; B[2단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B --&gt; C[3단계 위험성 평가]     C --&gt; D[4단계 위험성 수용 정도 검토]     D --&gt; E[5단계 개선대책 수립 및 검토]     E --&gt; F[6단계 기록 및 보존]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평가대상 작업 선정 : 평가자료 준비 (유해위험요인 정보, 주변 환경 정보, 현재 작업 위험성, 재해사례 등)</li> <li>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원인, 피해대상, 피해형태를 현장순회점검 등을 통해 조사</li> <li>다. 위험성평가 :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성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3~5단계 등)를 정한다. 최상, 상, 중, 하, 최하</li> <li>- 중대성 추정 : 치명적(사망 등), 중대, 중등, 경상</li> </ul> </li> <li>라. 위험성 수용정도 검토 : 위험성 수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용 정도를 검토</li> <li>마. 개선계획 수립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본질적 대책 - (2순위) 공학적 대책</li> <li>- (3순위) 관리적 대책 - (4순위) 개인보호구의 사용</li> </ul> </li> <li>바.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자료는 최소 3년간 보존</li> </ul> </li> </ul>	

##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 및 점검 점검표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구 분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위험성평가 (최초,정기, 수시)시행 계획 수립 및 점검	◆ 계획 :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서류화 등) 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문서화 및 관리 여부 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의 적정성 다.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 대상 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등 관련 서류 마.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대상 및 활용 여부	○	
	◆ 이행 :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이행 여부 가. 위험성평가 참여자 참여 여부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종사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나. 위험성평가 대상의 적정성(재해사례 반영 여부) 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의 적정성(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등) 라. 위험성 추정방법 중 1가지 이상 적용여부 확인(곱셈) 마.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 준수 여부(예상 부상 또는 질병) 바. 위험성평가가 결과,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 확인		
2.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및 결과 보고(반기 1회 이상)	◆ 개선활동 : 위험성 결정 결과의 대책수립 적정성 여부 가. 개선활동 확인(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여부)	○	
	◆ 기록 : 위험성평가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여부		
	◆ 교육 : 실시 전·후 교육 가. 위험성평가 전 사전교육 시행 여부 나.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게시, 주지 등의 실시 여부		

## ■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 작성대상 : 2022년 상반기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연 번	구 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 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점검결과
1	정 기	청계천관리처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보고 (청계천관리처-1841호, '22.03.22.) <청계천>	안전난간 주변 청소시 떨어짐	불가능	청소용 장대형 집게 사용	2022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조치결과 보고 (청계천관리처- 4065호, '22.06.16.)	○
2			복개구조물 내 밀폐공간 점검·작업 중 질식	불가능	작업 전 위험예지활동 실시 (TBM)		○
3			펌프설비 점검·정비 시 지하 밀폐공간 산소결핍	불가능			○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 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점검결과
1	정기	2022년 청계천관리처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보고 (청계천관리처-1841호, '22.03.22.)  <청계천>	등기구 및 전등 교체작업 시 전선로에 의한 감전	불가능	작업 전 위험예지활동 실시 (TBM)	2022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조치결과 보고 (청계천관리처- 4065호, '22.06.16.)	○
			분전반·제어반 점검·정비 중 감전	불가능			○
			잡철물 제작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불가능			소화기구 비치(분말소화기 휴대)
			등기구 및 전등 교체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 떨어짐	불가능	말비계형 사다리 사용		○
			CCTV 점검·정비 시 이동식 사다리 떨어짐	불가능			○
			계측기류 점검·정비 중 이동식 사다리 떨어짐	불가능			○
			탈취설비 점검·정비 중 이동식 사다리 떨어짐	불가능	사다리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
			풍수해 수문 복구 작업 이동 시 둔지에서 떨어짐	가능	이동식사다리 활용(전도방지대 부착)		○
			수문 복구작업 중 바닥면 슬러지에 의한 미끄러짐	가능	작업 전·후 주변 슬러지 제거		○
			수목 전정작업 시 동력장비에 의한 신체 절단·베임	가능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 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점검결과
2	정기	2022년 청계천관리처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보고 (청계천관리처-1841호, '22.03.22.)  <유지용수관리소>	전기기구 사용 및 점검 중 감전사고 위험	가능	· 전기기구 손상 확인 및 절연 보호구 착용 · 정기적인 요청 검사 실시	· 절연보호구 추가 구비 · 2인1조 작업	○
			취수설비 원격감시체계 미흡으로 인한 위험	가능	· 취수장 원격감 시체계 향상	· CCTV 2대 추가설치 · 구매설치 진행 중	○ (7월 준공)
			회전설비 점검 시 끼임 위험	가능	· 회전부 방호장치 설치상태 확인	· 작업 전 방호 장치 점검 및 보호구 착용	○
			점검계단 이동시 떨어짐 위험	가능	· 계단 미끄럼방지 조치	· 미끄럼방지테 이프 부착완료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감염 위험	가능	· 자가진단 및 기록, 최소근무인원 유지	· 개인별 방역지침 준수	○
			교대근무 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 위험	가능	· 근무자 심혈관 계질환 예방	· 상비약품 구비, 건강검진 시행	○

## ■ 추가 유해 ·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 작성대상 : 2022년 상반기

### - 「서울시설공단 위험요인 소통센터」 개선실적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연번	장 소	접수내용	개선결과	점검결과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현황 ※ 작성대상 : 2022년 상반기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연번	발생일	발생장소	발생형태	점검내용	개선결과	점검결과	비고
1	-	지하기계실	넘어짐	고정식사다리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한 떨어짐	미끄럼방지테이프 부착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현황 제출 (정계천관리 차-2968, '22.05.03.)
2	-	산책로	넘어짐	바닥부 파손에 의한 넘어짐	소파보수 완료	○	
3	-	산책로	넘어짐	산책로 일부구간 야자매트로 인한 넘어짐 위험	시선유도판 설치	○	
4	-	진출입계단	넘어짐	계단이용 시 발판 흔들림에 의한 넘어짐 위험	발판 재고정 완료	○	
5	-	전망데크	넘어짐	전망데크 이용 시 바닥부 파손에 의한 넘어짐	파손부 교체	○	
6	-	A형사다리	떨어짐	A형사다리 고소작업 중 떨어짐 위험	전도방지대 부착 사용	○	
7	-	진출입계단	떨어짐	안전난간 탈락에 의한 이용 중 떨어짐 위험	안전난간 용접 보수	○	
8	-	고산자교 탈취설비	떨어짐	탈취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투입구 내 떨어짐위험	자재투입구 잠금장치 설치	○	
9	-	산책로 내 맨홀뚜껑	미끄러짐	강우 시 맨홀뚜껑(철판) 상부 보행시 미끄러짐	미끄럼방지테이프 부착	○	
10	-	징검다리	미끄러짐	징검다리 이용 중 미끄러짐 위험	위험표지판 부착 보수	○	
11	-	모전교	부딪힘	교량허부 보행 중 아치형 교량에 의한 머리 부딪힘 위험	보행위험구간 바닥부 표시	○	

- 부서 SNS(band, 카카오톡 등)를 활용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연번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점검결과	비고
1	넘어짐, 미끄러짐, 떨어짐 등	진출입계단 테크, 난간 보수, 산책로 소파보수 등 상시정비 시행 (청계천 시설물 월간 정비결과 보고)	○	

## ■ 도급사업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 점검 점검표

구 분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위험성평가 (최초,정기, 수시)시행 계획 수립 및 점검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 가. 도급사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 나. 도급사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정보 전달 여부	▷	1건 미시행, 접수예정

## ■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 대상사업 : 2022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한 사업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연번	분야	사업명	위험성평가 시행확인		점검결과	비고
			최초	수시		
1	용역	2022년 청계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실시완료 (청계천관리처 -2471)	-	○	
2	용역	2022년 청계천 하상정비 용역	실시완료 (청계천관리처 -1727)	-	○	
3	용역	2022년 청계천 녹지관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	-	○	위험성 낮음
4	용역	2022년 청계천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실시완료 (청계천관리처 -4086)	-	○	
5	용역	2022년 청계천 준설토 처리용역	실시완료 (청계천관리처 -3325)	-	○	
6	용역	2022년 청계천 유지용수 응집지 및 침전지 청소 용역	실시완료 (청계천관리처 -3607)	-	○	

## 06.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p>◆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p> <p>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p> <p>나. 제3호에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p> <p>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중대 재해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p>◆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p> <p>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p>	
3. 예산의 편성 기본원칙	<p>◆ 예산편성 원칙</p> <p>가.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함</p> <p>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 대체, 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p> <p>다.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li> <li>-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의미함</li> </ul>	예산편성 및 관리 원칙
4. 예산운용 시 착안사항	<p>◆ 착안사항</p> <p>가. 안전예산이 적정시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목적달성시 예산집행 완료로 간주)</p> <p>◆ 준수사항</p> <p>가. ○○년도 안전예산 편성 대비 실적 반기별 점검</p>	준수사항

## ■ 안전·보건 인력 현황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분야	직위	성명	선임일	업무내용	점검결과	비고
관리감독자	처장	김국현	2020.12.18.	안전·보건 관리감독 청계천 총괄	○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하태현	2019.12.26.	안전·보건 관리감독 관리소 총괄	○	
안전담당자	과장	송은배	2022.03.03.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	검직

### □ 안전·보건 인력증빙 내역 첨부

분야	사업소명	성명	선임증명	비고
안전담당자	청계천관리처	송은배	청계천관리처 업무분장 조정 시행 청계천관리처-1333호(2022.03.03)	검직

##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항목	편성	집행	집행율	비고
총계	35	2.5	7%	
시설(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시설)	-	-	-	
장비(안전 및 보건관리 장비)	-	-	-	
안전장구류(개인보호구 등)	5	2.5	51%	
점검	30	-	0%	하반기 집행예정
교육훈련	-	-	-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예산)	-	-	-	

#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점검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 및 집행	편성	35	집행	2.5	집행율	7%
-----------	----	----	----	-----	-----	----

○ 시설(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시설)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해당사항 없음						

○ 장비(안전 및 보건관리 장비)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해당사항 없음						

○ 안전장구류(개인보호구 등)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안전 장구류	안전용품 구매	5	2.5	51%	○	-

○ 점검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	30	-	0%	▷	하반기

○ 교육훈련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해당없음						

○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예산)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해당없음						

※ 안전예산 집행율은 이행실적 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안전예산 사업 목적달성시 예산집행 완료로 간주 함

# 0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p>◆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라 한다)</p> <p>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p>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p> <p>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p>	중대 재해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p>◆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p> <p>가. 산업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p> <p>나.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함</p>	평가기준 운영
3. 관리감독자의 업무	<p>◆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li> <li>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li> <li>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li>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li> <li>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li> <li>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li> <li>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li> </ul> </li> <li>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li> <li>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li> </ul> </li> <li>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 관리감독자의 업무(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관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li> <li>2.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li> <li>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li>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li> <li>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li> <li>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li> <li>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주요 수행업무
4. 업무에 대한 점검 업무	<p>◆ 관리감독자 업무 준수 여부</p> <p>내부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p>	착안사항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검결과	비 고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내부경영평가 연계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률		
	○ 작업장 현장관리 점검 평가		
	○ 안전관리자 지도, 조건에 대한 협조 노력		
	○ 위험성평가 실시 개선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1.0%, 부서,관리소)

##### - 평가기준

- (전직원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분기별 1회 이수 (총 4회)
- (신규 채용직원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이수 (8시간 이상)

\* 대상 : '22년 신규 채용 근로자

##### - 추가 가점 부여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수율(배점 1점)' 내에서 가점 부여(초과 불가)

- 가점 인정 대상 : 사이버인재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수 또는  
부서장(관리 감독자)이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참여인원

※ 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교육과는 별도 실시

##### ·이수율에 따른 가점

이수율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
가점				

2.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률 (1.0%, 부서)

- 평가점수 =  $\frac{\text{재발방지 대책수립 건수}}{\text{산업재해발생 건수}} \times 100$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 건 중 공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한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산업재해로 인한 i)중상, ii)사망사고, iii)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안전처에 사고발생 지연보고로 산업재해 제출기한(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건]

⇒ ①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지표 '0'점 부여

※ 산업재해 미발생 시 만점 부여

3. 작업장 현장관리 점검 평가 (1.0%, 부서,관리소)

- 평가점수 =  $100 - \frac{(\text{산업재해예방점검 지적 건} \times 10)}{\text{지적 건}} + \frac{(\text{산업재해예방 점검 수범 건} \times 10)}{\text{수범 건}}$

- 평가기준

· 산업재해예방 점검 분기별 실시(4회/연)하여 지적 및 수범 사례 총 합산

※ 기획, 인사, 홍보, 인재, IT, 기술혁신(TF), 안전처 평가 제외

4. 안전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노력(1.0%, 부서,관리소)

- 평가점수 =  $\frac{\sum \text{안전보건관리 방침 수립(5건) 기간 내 이행 점수}}{\text{총 5건}}$

※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방침 수립 (총 5건)

구분	상반기 방침 수립 (3건)	하반기 방침 수립 (2건)
산업안전 보건관리 관련 방침 수립	(1) 안전보건관리계획 (1건) (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결과 (1건) (3) 위험성 평가 (1건)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1건) (2) 위험성 평가 (1건)

-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 위한 부서 방침(계획)’ 기간 내 수립 여부 평가

(1) 안전보건관리계획 (연1회)

(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결과 (반기별)

(3) 위험성 평가 (반기별)

- ▶ 항목별 기간 내 수립 여부 : (1)번 항목 : 연 1회 점검,  
(2, 3)번 항목: 반기별 점검

· 기간 내 이행 점수 : 위 항목 5건에 대한 기간 내 이행 점수를 총 합산하여  
평균점으로 최종 평가

내 용	기간 내 수립	수립 지연		
		7일미만	7일이상 14일미만	14일이상
점 수	100점	95점	90점	80점

※ 단, 2022년 상반기 평가는 ‘상반기 방침 수립’ 중 ‘(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결과’ 항목 반영

#### 5. 위험성 평가 실시·개선 (2.0%, 부서,관리소)

- 평가점수 =  $\frac{\text{실 적}}{\text{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건수(5건)}} \times 100$

- 평가기준

※ 위험성 평가 중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건수 평가항목으로 반영

※ 부서별 위험성평가 반기별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건수 5건  
이상이면 만점

## 08.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해진 수 이상 배치 가이드 및 점검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p>◆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른 선임 - 상시근로자 1,000이상 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p> <p>◆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건설업 공사 금액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건설공사 발주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0%;">공 사 금 액</th> <th style="width: 30%;">시 행 일</th> <th style="width: 40%;">안 전 관 리 자</th> </tr> </thead> <tbody> <tr> <td>공사금액 80억원 이상</td> <td>'21년 7월 1일</td> <td>1명 이상</td> </tr> <tr> <td>공사금액 60억원 이상</td> <td>'22년 7월 1일</td> <td>1명 이상</td> </tr> <tr> <td>공사금액 50억원 이상</td> <td>'23년 7월 1일</td> <td>1명 이상</td> </tr> </tbody> </table>	공 사 금 액	시 행 일	안 전 관 리 자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21년 7월 1일	1명 이상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22년 7월 1일	1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3년 7월 1일	1명 이상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공 사 금 액	시 행 일	안 전 관 리 자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21년 7월 1일	1명 이상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22년 7월 1일	1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3년 7월 1일	1명 이상												
2. 법에 의의	<p>◆ 시행령 제4조,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3항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05.18&gt;&lt;시행일 2021.11.19&gt;</p>	안전관리자 배치의무사항												

### 1-A. 안전 및 보건관리자 현황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부 서	직 급	직 위	성 명	선 임 일	자 격 요 건	점 검 결 과	비 고
안전처	3	안전관리자	최상훈	-	-	○	안전처 점검사항
안전처	3	안전관리자	류호경	-	-	○	
안전처	6	안전관리자	박언규	-	-	○	
안전처	6	보건관리자	서아름	-	-	○	
인사노무처	6	보건관리자	이희경	-	-	○	

### 1-B 부서별 안전 및 보건관리자 현황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부 서	직 급	직 위	성 명	선 임 일	자 격 요 건	점 검 결 과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1-C. 공사별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단위 : 억원]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점 검 결 과
해당사항 없음					

## 09.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 가이드 및 점검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사규 등)	시행 주기	위원 구성	비고
1.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분기	- 서울시설공단 노·사 간 · 사용자 위원 (사업주 등 11명 내외) · 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 등 11명 내외)	
	□ 회의결과 이행 및 공지 : 회의 결과에 따른 시행 및 게시, 시행품의(개최/결과보고) 후 결과 게시 ○ 회의 결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조치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개최하는 사업장은 분기마다 1회 실시			
2. 안전보건 경영 위원회	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조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반기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개월	- 서울시설공단 / 도급사	
	□ 회의결과 이행 및 공지 : 회의 결과에 따른 시행 및 게시, 시행품의(개최/결과보고) 후 결과 게시 ○ 회의 결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조치 한다			

## ■ 안전·보건 관련사항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관련 점검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부서이행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년도	분기 (개최일)	논의내용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관련문서)
2022	1분기	해당사항 없음			
	2분기	해당사항 없음			

- 부서별 별도 종사자 의견청취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의견청취 방법	청취결과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관련문서)
부서 SNS, 전화를 이용한 의견청취	안전요원 동절기 동상 위험	귀마개 구매·지급	○	(청계천관리 처-59호, '22.01.04.)
	순찰용 자전거 고장으로 넘어짐 위험	자전거 고장 시 즉시 수리	○	(청계천관리 처-2072호, '22.03.31.)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용역관련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순번	사업명	협의체 대상여부	개최여부	협의내용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1	2022년 청계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미대상 (간헐적 작업)	-	-	-	○	
2	2022년 청계천 하상정비 용역	미대상 (간헐적 작업)	-	-	-	○	
3	2022년 청계천 녹지관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미대상 (간헐적 작업)	-	-	-	○	
4	2022년 청계천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미대상 (간헐적 작업)	-	-	-	○	
5	2022년 청계천 준설토 처리용역	미대상 (간헐적 작업)	-	-	-	○	
6	2022년 청계천 유지용수 응집지 및 침전지 청소 용역	미대상 (간헐적 작업)	-	-	-	○	

· 구매설치관련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순번	사업명	협업체 대상여부	개최여부	협약내용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위탁사업관련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순번	사업명	협업체 대상여부	개최여부	협약내용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업관련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순번	사업명	협업체 대상여부	개최여부	협약내용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해당사항 없음							

# 10.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여부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운영)</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li> </ul>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매뉴얼 운영</li> <li>가. 사업장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li> <li>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절차 수립 및 이행</li> </ul>	매뉴얼 운영
3.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설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설정 기준</li> <li>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li> <li>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li> <li>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li> </ul>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설정기준
4.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사항</li> <li>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및 발생보고 등 지침의 운영 여부</li> <li>나. 구체적인 시나리오(질식, 화재, 감전, 협착 등) 발굴 및 교육훈련 이행</li> <li>다. 비상사태 모의훈련 실시결과 및 훈련 후 피드백 실시결과 확인</li> <li>라.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li> <li>마.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현황</li> <li>◆ 대응조치 이행시 고려사항</li> <li>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확인</li> <li>나. 요청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실적 확인</li> <li>다.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 여부 확인</li> <li>라.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했는지 확인</li> <li>마.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 지시 확인</li> <li>◆ 구호조치 이행시 고려사항</li> <li>가. 비상대응 시설·장비(소화기, 방독면, 구급함 등) 관리의 이행 여부</li> <li>나. 사업장별 병원 지정 및 연락체계 수립여부 확인(게시물 등)</li> <li>다. 구급함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응급처치방법을 정확히 모를 경우 상태를 관찰하며 119 구급대응 전문가 도착까지 대기)</li> <li>◆ 추가 피해방지 조치 이행시 고려사항</li> <li>가. 비상시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운영 여부</li> <li>나.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 보유 및 운영 여부</li> <li>다.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여부, 방법, 조사팀 구성,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li> <li>라. 재해발생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의 시행여부 및 안전작업 절차의 보완 또는 제정 여부</li> </ul>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여부 점검표

• 범례 : 완료 (○), 진행 (▷), 미시행 (-)

구 분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사규 등)	추진실적 문서화	점검결과	비 고
1.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실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제8호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다. 사규[안전보건관리규정 26~27조] 라. 작업중지 요청제(Safe-Helper) 운영 계획 (안전처-5926, 2019.11.29.)	· 반기별 작업중지 요청서 운영실적 결과보고 (문서번호)	[해당사항 없음]	모 든 사업장
2. 재해자 구호조치 훈련 시행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제8항 (구호조치) 다. 사규[안전보건관리규정 45~46조]	· 반기별 재해자 구호조치 훈련 시행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수립 시 산업재해 유형별 연락체계 게시 등 포함 · 반기별 1건 이상 훈련	○ [실시완료]	모 든 사업장
○ 요구사항 (공통)	◆ 밀폐공간 작업시 구조 ◆ 화재 발생시 구조 ◆ 감전 사고발생시 구조 ◆ 협착 사고발생시 구조훈련 등 ※ 부서특성에 맞는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3.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제8항 (재발방지조치) 다. 사규[안전보건관리규정 47조]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결과 등 제출	[해당사항 없음]	재해발생 사업장
○ 요구사항 (공통)	◆ 산업재해 보고 : 재해발생사업장 ▶ 본사 안전처 ※ 재해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 시간, 장소, 경중 불문하고 사건·사고 발생(인지) 즉시 SNS 재난대응방(카카오톡)에 공유 ※ 공단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수립 및 조치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연번	주요내용	수립 여부	조치내용	점검 결과	비고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수립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훈련 실시 완료 (청계천관리차-4392호, '22.06.28.)	○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수립		○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수립		○	

# 11.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및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li> </ul>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li> <li>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li> <li>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li> <li>다. 건설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에 관한 기준</li> </ul>	안전보건 확보기준
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기준</li> <li>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적용(2022.1.20.)</li> <li>나. (입찰, 소액수의)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준수 문구 추가</li> <li>다. "협상에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 발주부서에서 평가방법을 작성 할 수 있는 계약은 평가항목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항목 반영</li> <li>라.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필수양식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li> <li>마. 안전관리비 확대반영 : 건설공사, 구매설치 ⇨ 건설공사, 구매설치, 용역</li> </ul>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 적정성
4.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점검 기준</li> <li>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li> </ul>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성
5. 건설업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li> <li>도급, 용역, 위탁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li> </ul>	공사기간의 적정성

##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호 가목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적용(2022.1.20.)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2
	· 최근 3년간 사만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

○ (입찰, 소액수의)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준수 문구 추가

- 입찰공고문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 발주부서에서 평가방법을 작성 할 수 있는 계약은 평가항목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항목 반영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필수양식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점검표

- 공사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기간반영 및 비용 지급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연번	공사명	총 공사금액 * 단위: 백만원			공사가간 산정기준 적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 준수사약서	점검 결과
		계	도급비 (계약금액)	관급비					
1	2022년 청계천 녹지 유지관리공사(연간단 가)	124	124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2	2022년 청계천 분수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7	-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3	삼각동천 탈취설비주변 녹지대(교통섬) 복구공사	8	-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4	2022년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조경 유지관리공사(연간단 가)	88	87	1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5	청계천 준치교각 노후 경관조명 개선 공사	19	9	10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6	오간수교 상류(우안) 수변무대 축광석 설치공사	9	9	-	미적용 (30일 미만)	해당없음 (2천만원 미만)	미반영	작성	○
7	2022년 청계천 시설물 보수공사	130	130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8	2022년 청계천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101	71	30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9	2022년 청계천 준설공사	286	286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10	청계천 하류부 산책로 아스콘 포장공사	10	10	-	적용	해당없음 (2천만원 미만)	미반영	작성	○
11	청계천 복개구조물 위상시스템 2단계 구축 공사	8	8	-	미적용 (30일 미만)	반영	미반영	작성	○
12	2022년 청계천 유지용수 취·송수펌프 정비 보수공사	23	23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13	유지용수관리동(전기 실) 옥상 방수공사	22	22	-	적용	반영	미반영	작성	○
14	자양취수장 CCTV 증설 공사	5	5	-	미적용 (30일 미만)	해당없음 (2천만원 미만)	미반영	작성	○

- 용역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지급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연 번	용역명	용역금액 (계약기준, 백만원)	용역기간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점검 결과
1	2022년 청계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5	2022.01.01. ~ 12.31.	미반영 (지침하달 이전 발주건)	미작성 (21년도 발주)	○
2	2022년 청계천 하상정비 용역	78	2022.03.03. ~ 12.31.	반영	작성	○
3	2022년 청계천 녹지관리 입목폐기물 처리 용역	10	2022.04.08. ~ 12.20.	미반영 (재해발생 가능성 낮음)	작성	○
4	2022년 청계천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0	2022.04.13. ~ 10.14.	반영	작성	○
5	2022년 청계천 준설토 처리용역	35	2022.04.29. ~ 11.30.	반영	작성	○
6	2022년 청계천 유지용수 응집지 및 침전지 청소 용역	12	2022.05.18. ~ 11.30.	반영	작성	○

- 구매설치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지급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연 번	사업명	사업금액 (계약기준, 백만원)	사업기간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점검 결과
--------	-----	---------------------	------	-------	-----------------	----------

해당사항 없음

- 위탁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지급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연 번	위탁명	위탁금액 (계약기준, 백만원)	위탁기간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점검 결과
--------	-----	---------------------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지급

• 범례 : 완료(○), 진행(▷), 미시행(-)

연 번	사업명	사업금액 (계약기준, 백만원)	위탁기간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점검 결과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님(붙임 '참고 1' 참조)
  -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가이드 및 점검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천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 법령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점검항목	관련근거	점검 결과	비고
1. 안전보건 관계법률 이행 점검 <sup>1)</sup>	1.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정성	산안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은폐 금지 및 보고)	○	관련 증빙 첨부
	2.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전담업무 여부	산안법 제17조, 제18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여부	산안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4.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안법 제63조~66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성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6. 기계기구(선반, 밀링 등) 방호장치 설치/관리 여부	산안법 제80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7. MSDS 교육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시행 여부	산안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8. 특수검진 시행의 적정성(유해인자 반영 여부)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9.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유 여부	산안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10.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여부	산안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11.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여부	산안법 제93조 (안전검사)	○	
	12. 현장 TBM 시행 및 일지 점검	사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	
	13. 현장 안전보호구 착용의 적정성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점검은 위 표를 기본으로 하되, 점검시행

## ■ 안전·보건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

연번	관계법령	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비고
		점검방법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1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점검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생태반 다목적 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수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완료(7월)	
2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자체점검	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청계광장 등 기계실(분수, 탈취) 내 분수펌프, 탈취팬 가동 시 소음발생에 의한 귀덮개 비치 및 착용 필요(권고)	기계실 내 귀덮개 비치완료(7월)	
3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자체점검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저장공간 (응집제, 알루미늄 화합물) 출입제한 표지판 미설치	표지판 설치완료 (7월)	

사업부서 특성에 맞게 추가 보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 사항은 부서 특성에 맞게 추가 보안 실시하여야 함

# 13.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가이드

○ 점검일 : 2022. 6. 30.

○ 부서명 : 청계전관리처

○ 점검자 : 송 은 배 (인)

◆ 교육이행 실적 점검	◆ 교육 대상자	◆ 관련 법규기준 이행 방법(착안사항) 가이드
1. 안전관리자 교육(신규/보수)	안전관리자	◆ 교육일지(사진포함), ◆ 내부결과보고 문서 전체 -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 정리 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실적 문서 확인 ②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실적 문서 확인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및 기타 법정 안전 교육 내용 확인(안전절차, 위험성평가, 주의 사항 등)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내용 확인 ⑤ 안전교육이 안전경영방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구성되었는지 확인 ⑥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⑦ 직무교육 이수현황 확인 ⑧ 근로자 채용시 교육, 건설용 리프트 이용 근로자 특별교육 ⑨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행 ※ 증빙서류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할 것
2. 보건관리자 교육(신규/보수)	보건관리자	
3. 근로자(본사 및 사업장)	전 직원	
4. 관리감독자 교육	부서장, 팀·소장	
5. 신규 채용시 교육	채용시(전 직원)	
6.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작업 등	대상 근로자	
7.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대상 근로자	
8.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등	대상 근로자	
9. 전기 및 활선작업 등	대상 근로자	
10. (6~9)과정을 제외한 특별안전 교육	대상 근로자	
11. 담당 작업 변경 시(정규/단기 동일)	대상 근로자	
12.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취급대상 근로자	
◆ [법적근거] 본사 및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이행방안 설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5를 참조 다. 특별교육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제1호 라목의 40개 작업항목을 반드시 참조하고 필요시 간헐적 작업의 경우는 2시간, 상시 근로 작업자의 경우는 16시간의 교육 시행 라. 모든 법정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우편교육, 실시간 화상교육이 모두 인정되나, 사업장별 자체 계획수립에 의거 시행		마. 정기 안전보건교육시에는 분기별 1시간씩 MSDS 교육을 시행하고 증빙을 기록 보관 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16시간)은 2년 주기로 지정된 취급담당자를 별도관리 및 반드시 교육 이수 후 작업에 투입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 중 교육확인

##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표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분	법정 재난안전보건 교육과정	시행주기	교육 시간		점검 결과	법적근거
			신규교육	보수교육		
1.직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신규/보수)	선임 시 (3개월 내) 2년 주기(보수교육) (2년 주기별) * 전후 3개월 사이에 시행할 것	34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관련)
2.정기 교육	• 근로자(본사 및 사업장)	분기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관리감독자 교육(부서장, 팀·소장)	매년	16			
3.채용 교육	• 신규 채용시 교육(신입/경력 동일)	채용시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4.작업 내용 변경시	• 해당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5.특별 교육	•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작업 등	상시 근로 작업자 16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작업변경 시 직원/기타 2시간 *단기근로자 1시간  ※기타 특별교육 대상작업 40종 참조	1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5) (제1호 라 목) 40개 분야 중, 해당 작업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16/(2)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등		16/(2)			
	• 전기 및 활선작업 등		16/(2)			
	• 위, 4개 과정을 제외한 특별 교육		16/(2)			
	• 담당 작업 변경 시(정규/일용 동일)		2			
6.유해 화학 물질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2년	16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 근태 발생 등 교육시행 제약사항 발생시 관련 증빙 또는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 기록유지

※ 상기 교육은 법정교육 중심으로 편성된 리스트이며, 반드시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 기록유지

##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표

구분	법정 재난안전보건 교육과정	대상	실시	미실시	미실시 사유	시행 주기	교육 시간	비고
1.직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신규/보수)	해당없음	-	-	-	선입 시	신규-34 보수-24	
2.정기 교육	• 근로자(본사 및 사업장)	1분기	91	88	3	휴직 3	분기	6
		2분기	103	99	4	휴직 4		
		3분기						
		4분기						
	• 관리감독자 교육(부서장, 팀.소장)	부서장 1 현장소장 1	-	2	하반기 안전처 시행예정	매년	16	
3.채용 교육	• 신규 채용시 교육(신입/경력 동일)	기간제 (안전요원)	12	-	-	채용시	8	
4.작업 내용 변경시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해당없음				작업내용 변경시	2	
5.특별 안전 교육	•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작업 등	22	22	-	-	상시 근로 작업자 16시간 간헐적 작업 시 (2시간)	16/(2)	간헐적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해당없음					16/(2)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등	해당없음					16/(2)	
	• 전기 및 활선작업 등	시설팀 5 유지용수 11	16	-	-		16/(2)	간헐적
	• 위, 4개 과정을 제외한 특별교육	해당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기타)	유지용수11	11	-	-		16/(2)	
	• 담당 작업 변경 시(정규/일용 동일)	해당없음					2	
6.유해 화학 물질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해당없음				2년	16	

## ■ 도급사업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표

※ 대상사업 : 2022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한 사업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연번	분야	사업명	교육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용역	2022년 청계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 6건	• 근로자 정기교육	○	